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허6030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만금, 정인규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유창순, 선태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강해성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폴라리스 담당변리사 이영걸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10. 28. 2021당58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1. 28./ 2016. 7. 5./ 특허 제1638378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도면이미지 내 선분을 추출하여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도형 내 세부영역을 파악하여,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에 부합하는 높이정보를 적용하여 3차원 공간모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면이미지내에서 선분을 나타내는 색상을 식별하여 선분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인식된 선분의 꼭지점을 파악하고, 상기 꼭지점을 기초로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식된 선분의 꼭지점 파악은, 특정한 크기의 클

러스터를 특정한 색상을 따라 일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연속되는 상기 특정한 색상이 끊기는 지점을 꼭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청구항 4 내지 5] (기재 생략)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에 부합하는 구성요소를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청구항 7] (기재 생략)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유형에 상응하는 바닥 또는 벽의 재질을 파악하여, 3차원공간의 척도에 부합하도록 상기 바닥 또는 벽에 적용하는 단계; 및 상기 공간유형 또는 상기 공간의 형태에 상응하는 집기류를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기재 생략)

4) 정정발명의 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22. 3. 31.자 2022정2호 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범위로 밑줄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삭제, 정정사항 없음)

[청구항 2]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도면이미지 내 선분을 추출하여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도형 내 세부영역을 파악하여,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에 부합하는 높이정보를 적용하여 3차원 공간모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면이미지 내에서 선분을 나타내는 색상을 식별하여 선분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인식된 선분

의 꼭지점을 파악하고, 상기 꼭지점을 기초로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면이미지는 건물 내부 공간의 공간배치도를 포함하는 2차원 이미지이고, 상기 도면이미지는 각각의 RGB 값을 가지는 복수의 픽셀을 포함하며, 상기 선분을 인식하는 단계는 상기 도면이미지 내에서 특정 RGB 값을 외벽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인식된 선분의 꼭지점은 상기 도면이미지 내에서 연속되는 상기 색상이 일방향에서 끊기는 지점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 모델링 방법.

[청구항 3] 도면이미지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도면이미지 내 선분을 추출하여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도형 내 세부영역을 파악하여,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및 상기 세부영역의 공간유형에 부합하는 높이정보를 적용하여 3차원 공간모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도면이미지내에서 선분을 나타내는 색상을 식별하여 선분을 인식하는 단계; 및 상기 인식된 선분의 꼭지점을 파악하고, 상기 꼭지점을 기초로 도형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면이미지는 건물 내부 공간의 공간배치도를 포함하는 2차원 이미지이고, 상기 도면이미지는 각각의 RGB 값을 가지는 복수의 픽셀을 포함하며, 상기 선분을 인식하는 단계는 단계는 상기 도면이미지 내에서 특정 RGB 값을 외벽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식된 선분의 꼭지점 파악은, 특정한 크기의 클러스터를 특정한 색상을 따라 일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면서 연속되는 상기 특정한 색상이 끊기는 지점을 꼭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청구항 4 내지 8] (정정 전과 동일)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정정 전과 동일)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21. 2. 24.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제2, 3, 6, 8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21당581).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1. 10. 28.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3, 6, 8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후1706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21. 2.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 3, 6, 8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2021당819), 특허심판원은 2021. 10. 28. '이 사건 제2, 3, 6, 8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2021허6023), 한편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3.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위 1의 가.4)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이 확정된사실, 이 법원은 2022. 11. 4.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 2022후1109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3.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무효심결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심결 이후에 이 사건 무효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 3, 6, 8항에 대한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